## ※ 소송물 가액 산정방법



#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(소가)의 산정방법

## 1. 행정소송의 소가의 산정방법

- 가.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,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, 유가증권 또는 물건가액의 3분의 1(다만,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)
- 나.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. 다만,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.
- 다. 금전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
- 라. 가. 내지 다. 이외의 소송 50,000,000원(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가주)
  - ※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

#### 2.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

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50,000,000원으로 한다.

#### 3. 특수한 소송

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도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,000,000원으로 한다.

#### 4. 수개의 청구

- 가.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
  - 합산하여 소가 산정(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,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)
- 나.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될 때
  - 그 중 다액을 소가로 함
- 다. 과실, 손해배상,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인 때
  - 그 가액은 산입 안함(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)

## ※ 민사소송등인지법 및 동규칙 참조